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867호, 2020. 1.21. 공포, 2020.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4대 보험 공통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27. ~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제목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을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으로 한다.

제44조의3을 제44조의4로 하고,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3조의 5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의4 중 “제73조의4제2항”을 “제73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조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29호의4서식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③(생략)	제44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③(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연금보험료의 환수 사실 통지) 공단은 영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및 환수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연금보험료의 환수 사실 통지) ----- 제73조의6 제2항----- ----- ----- -----.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내 容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	한금(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금(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고용·산재보험 건설업 일일납 재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건설업 일일납 재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 신청	고지방법 []전자우편 []휴대전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정보포털)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해당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YYYY.MM.DD)				
		분리적용사업장 []해당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있음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청)인이 직접 신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 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 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문: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 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 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 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7)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7)는 자 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고용·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법 제8 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보험별 금액도 표기)**으로 발송합니다. 월별보험료를 합산고지하며 **고용·산재보험의 일시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 각각의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면 지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대표자)" 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 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 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는 4대 사회보험료 모두 합산하여 출금 원하는 경우 적용에 "[√]" 표시, 원하 지 않는 경우는 미적용에 "[√]"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이체희망일"에 "[√]" 표시하며, 월별보험료인 경우 납기전월 말일 선택 가능합니다. 5. "전자고지 신청" 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 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적용 연월일" 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수" 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 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 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 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 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건강 보험	1. "적용 연월일" 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회계종목" 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 특성번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 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 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 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 보험	※ "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 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 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관리번호" 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 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 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 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 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 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공동대표자 현황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번호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번호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물:)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물:)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물:)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물:)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	----	----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우편번호()	

신고(신청) 사유	공동사항(중복선택불가) []폐업 []통폐합 []사업 종료 []그 밖의 사유		
	국민연금·건강보험 []휴업 []근로자 없음		
	고용·산재보험(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사유 발생일자(YYYY.MM.DD)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 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	-------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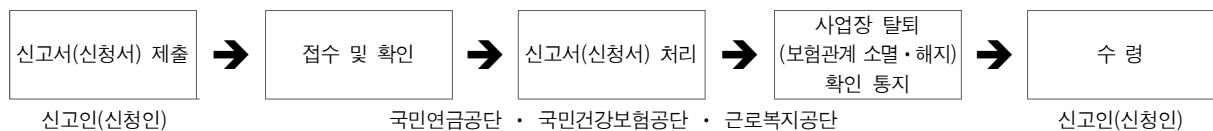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	----	----------------------------------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산재보험	산재보험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뒤쪽)

유의사항	
공통사항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기재하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2x.xx.xx (국민연금) 202x.xx.xx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제5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에 “√”표시를 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⑱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⑯-10기간근로수당과 ⑲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 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아직 사: 아직일 다음 날(아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처리기간
				3일
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원		
연간 농어업 종사일		일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 종사자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 (상기자는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업 규모	농지	m ² , 어선	톤, 양식	ha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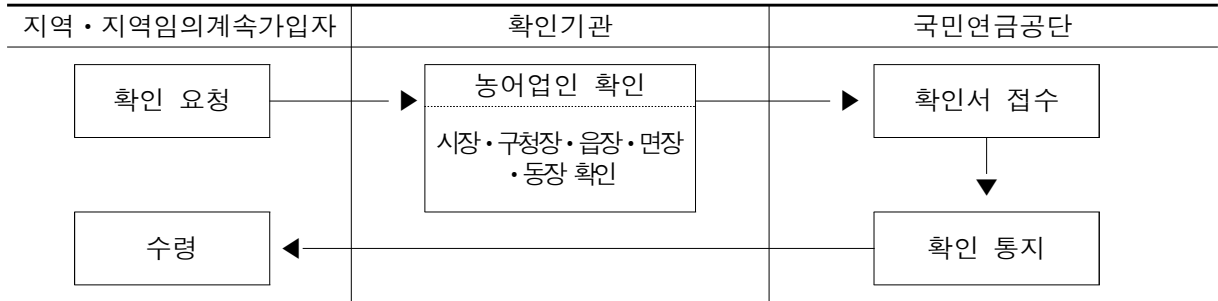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 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고, 해당란에 "☑" 표시 하십시오.
4.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5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직원 확인사항	지원신청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성방법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